

-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-
專門委員 檢討報告
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04년 12월 7일
- 회부일자 : 2004년 12월 8일

제안 이유

- 현지성사무에 대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 향상 및 주민편의를 위해 시장·군수에게 위임하고자 함

주요 골자

- 안전관리과
 - 『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도유 행정재산(하천, 제방)의 관리 및 사용·수익허가』 위임사무 신설
 - 『지방재정법 제82조 제5항에 규정한 도유 행정재산(하천, 제방)의 용도폐지』 위임사무 신설

검토 의견

-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실질적으로 시장·군수가 처리하고 있는 현지성사무에 대하여 그 권한과 책임에 맞게 관련조례를 일치시키고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주민편의 증진을 위해 시장·군수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,

○ 주요내용을 살펴보면,

- 안전관리과 소관, 『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도유 행정재산(하천, 제방)의 관리 및 사용·수익허가』 위임사무와
- 『지방재정법 제82조 제5항에 규정한 도유 행정재산(하천, 제방)의 용도폐지』 위임사무를 신설하려는 것임.

○ 따라서 그 동안 위임근거없이 본 사무를 시장·군수가 처리했던 것을 감안할 때 조례 개정을 통해 사무처리의 명확성을 기하려 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됨.

붙임 :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